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2. 29.(수) 14: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이통3사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59-216~23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이통3사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진술에 앞서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이동통신 3사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것을 명한다. [별지2] 기재 13개 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배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과도 마찬가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이동통신 외국인영업 가입자 192,774명 중 13개 판매점 가입자 12,161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조사 결과 10,939명의 가입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평균 295,67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유형별로 7,464명에게 3사 평균 21만원~34만원, 요금제별로 6,595명에게 29만원~33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외국인영업 판매점에게 건당 2만원~19만원의 우대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면서

가입조건을 관리하고 판매실적 등을 독려하여 과다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려금 투명화 관련입니다. 조사과정에서 12개 판매점은 대리점으로부터 표준서식이 아닌 문자 등의 수단으로 장려금 정책을 전달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과다 지원금 지급 관련입니다.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였으며, 위반률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영업 판매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관리하여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진술에 앞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측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지금부터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 확인하겠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 상무 성석함 님 나오셨습니까?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 한상혁 위원장

- 케이티 상무 이영호 님 나오셨습니까?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한상혁 위원장

- 엘지유플러스 상무 김윤호 님 나오셨습니까?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주)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이 자리는 시정조치에 앞서 귀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진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U+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SK텔레콤 정책협력담당 성석함입니다. 먼저 단통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시정조치를 받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금번 사실조사와 심결을 계기로 이용자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시장 전반의 문제를 재점검하고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통 시장은 정부의 지도와 사업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페이백, 성지점 줄서기 등 불·편법 원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 스스로 많은 개선노력을 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선 유통점과 판매점들의 역량 강화 등 양질의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금번 위원회 심결에 따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단말기 유통법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다음 KT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안녕하십니까? KT 공정경쟁담당 이영호 상무입니다. 먼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통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간 외국인 대상 영업대리점들에게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판매사 채용비용과 외국어 판촉물 제작비용 등 외국인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정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점들이 회사의 추가 지원 정책을 사용해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회사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귀 위원회의 실태점검 착수 이후 대리점들의 외국인영업 관련 추가 지원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리점들이 외국어 상담 가능 판매사 채용과 외국어 판촉물 제작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비용 집행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검증한 뒤 추가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대리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외국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도한 장려금, 불법 지원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LGU+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주) 공정경쟁담당 상무**

- LGU+ 공정경쟁담당 김윤호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금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받게 된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번 사실조사에서

지적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즉시 사내와 모든 유통망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사실조사기간은 물론 현재까지 유통망에서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영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제재처분 관련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시정조치(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별적 행위가 일부 외국인영업을 하는 판매점에서 전체 장려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했거나 단말기 구입 지원 목적이 아닌 국제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가입 정책에서 발생하는 등 소극적이고 일상적인 형태의 장려금 정책이었다는 점과 장려금 정책의 동기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경쟁 질서에 저해한 정도도 낮다는 점을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동 건 시정 조치와 관련한 귀 위원회의 사실조사에서 자료제출과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를 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중 일부 유통망의 일탈행위를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삼아 외국인영업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보조금 경쟁보다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등 본원적 경쟁을 통해 건전한 통신시장 조성 및 차별 없는 유통망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공통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과다 지원금 지급 그리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를 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주)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인정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현재 사무처의 사실관계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LGU+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주) 공정경쟁담당 상무
 - 인정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샘플링한 13개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구조적인 위반행위가 있었고 뭔가 위반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도 인정하십니까?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인정합니다.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인정합니다.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주)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먼저 KT 측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무슨 부분은 KT가 최다로 많았습니다. 그 이유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어제 보도자료가 나온 바와 같이 현재 무선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0만명당 2명 넘는 꼴로 분쟁조정 건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영업 일선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난 7월부터 CEO 지시사항으로 고객피해예방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일선 영업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2차적으로 분쟁이 발생되면 그것을 선 조정하려고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이야기를 최소화한 듣고 저희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분쟁 해결률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다음은 LGU+인데 LGU+는 분쟁조정 신청이 유선 부문에서는 또 가장 높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주)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제 유·무선 분야에 관한 발표자료를 봤습니다. 그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갔는데 해결률은 높지만 여전히 유선 분야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가입 신청 당시에 가입계약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가입 계약할 때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다음에 기록·관리를 잘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고객들 관점에서 고객들이 솔직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분쟁조정 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객 위주의 가입 절차, 운영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리고 SK텔레콤은 보니까 분쟁 해결에 있어서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타사와 비교했을 때 분쟁 해결 비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유·무선 똑같이 떨어지는데 분쟁 해결률이 LGU+ 같은 경우 88%까지 나오는데 SK텔레콤은 60%대 이런 식으로 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는 통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바로 분석작업에 들어갔고,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대안이 언제쯤 마련됩니까?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외국인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점이 몇 개씩입니까? SK텔레콤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저희가 이번에 조사대상이 됐던 업체는 13개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은 SK텔레콤 대리점 가운데서 13개뿐입니까?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아닙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조사대상이 13개였던 것이지요?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위원장
 - 대략 전체적으로 외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판매점은 몇 군데나 됩니까?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주) 정책협력담당 상무
 - 저희가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KT는요?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저희도 대리점은 1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위원장
 - 이번에 조사대상이 11개였고,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위원장
 - 전국적으로 외국인 대상 영업하는 대리점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LGU+는 어떻게 됩니까?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저희도 이번에 조사대상은 10개 대리점인데 저희는 외국인영업을 어떤 특정 대리점에 하라는 지시는 없고 누구든지 어떤 대리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분포가 구로나 용산 그다음에 군부대 있는 곳 위주이기 때문에 그 주변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17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판매점들, 대리점에 대한 본사 차원에서 특별히 다른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특별히 외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대리점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지 않고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대상 영업하는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특별하게 일반대리점보다 더 많이 시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이 외국인 대상으로는 영업비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그것은 일단 외국인영업을 하는 대리점 같은 경우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판매사들을 고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회사에서 추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전용대리점 같은 경우 판촉물을 대부분 외국어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판촉물 제작 추가 비용들을 저희 회사는 추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2007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그때 문제가 됐었다면 그것에 좀 더 신중한 주의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안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7년 3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자체 방통위가 특정해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된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로 나오고, 그래서 조사가 실행되어서 차별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당시에도 위반이 걸려서 3사가 다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2017년도 3월에 있었고 올해 선별적으로 어쨌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한 것인데 전체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방통위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나오고 나서 조사된 기간이 특정한 시간이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3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석함 에스케이텔레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과 위반율이 송구스럽게 높은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아울러 이것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이번 심결과 사실조사를 계기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추가로 두 회사도 마찬가지로인데 지금 판매점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않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13개, 11개, 10개 이렇게 랜덤으로 추적해서 판매점의 이런 불법행위를 조사한 것인데 지금 세 분 다 공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점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아까 LGU+의 김윤호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가 대리점들에 대해 외국인만 대상으로 영업하라,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는 영업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거주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 같은 경우 외국인영업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 전용 대리점이 몇 개냐라고 파악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을 받은 저희 회사는 11개 대리점이 주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영업을 많이 하는, 대부분의 영업행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대리점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응당 그렇지요. 외국인만 가는 판매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되지만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것은 본사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인구가 대략 80~90%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주로 이용한 판매점과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과다하게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2017년도에도 있었다면 2021년도 지금 다시 우리가 대략 한 달 동안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태점검을 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실 때 적어도 좀 더 정성껏, 성의껏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3개, 11개, 10군데 정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예를 들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방통위에서 제안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심인이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시기에 제 기억으로는 광주의 이용빈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회사에서 보면 공정경쟁을 담당하는 분이고 다 정책협력을 담당하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방통위에서 질문한 내용을 그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어 있거나 사실관계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영업정책을 외국인영업 정책, 내국인 영업정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이고, 그다음에 영업도 대리점에 외국인 대리점, 국내 대리점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그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점을 어느 특정한 대리점이 외국인영업을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국제전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제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쪽에 장려금을 조금 더 줬습니다. 그 장려금이 자기네 영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복지에 써야 하는데 그것이 초과지원금으로 넘어가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저희가 가이드북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요 타깃들 조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한 것 위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교육시켜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번 건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동일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좀 더 모니터링을 잘하고 교육을 더 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방통위 보고를 보면 겸업하는 곳이 있고 전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략 상황에 따라 직접 사실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정작 회사 측에서는 외국인 전용이 없다고 하면 방통위가 조사한 겸업, 전용 이 개념이 틀렸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회사에서 외국인 전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방통위에서 사실조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 **김윤호 엘지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 그렇게는 아닙니다. 방통위에서 조사한 것은 표본을 보고 가장 외국인 가입을 많이 모집하는 판매점 위주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 **이영호 주식회사 케이티 공정경쟁담당 상무**

-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안)에 적혀 있는 겸업과 전용은 1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용이라고 표기했고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사업자와 유통점이 거래하는 경우는 겸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과 겸업은 유통점이 1개사와 거래하느냐 2개사 이상의 회사와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시정조치(안)에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내·외국인 정책 차별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고, 2017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점에 주지 않는 추가 정책을 저희가 유통망에 쫓았습니다. 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판매사 고용비용이라든지 판촉비용, 외국인 영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문제가 된 사항들은 그러한 추가 지원한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 추가 지원한 정책들이 불법지원금의 재원이 되거나 차별적 지원금의 재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번에는 사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통점에서 외국인 상담이 가능한 접수대를, 외국어 가능한 직원을 고용한 증빙을 내거나 판촉물을 제작하는 비용들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사후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집행해서 저희 추가 지원 정책이 불법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저희가 보고를 받고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규모집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고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을 제가 고민하는 것인데 이것이 판매점, 대리점에서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 보도를 볼 때 말씀대로 특정한 사례가 된 것이 외국인은 봐 주고, 외국과 통화가 많으니까 이익을 봐 준다면 국내에 있는 분들은 통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에 있는 분들도 이익을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단말기유통법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불법을 저질러도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개선해 주어야지 그런 불신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반되면 과태료 한번 내고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판매점들에게 최악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본사에서 내는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 부당한 행위보다 손해가 덜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말씀하셨던 통번역이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미 통계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보도가 되고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고 신뢰를 가지려면 통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방식이 촌스러운 방식 아니겠습니까? 통신3사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신력에 비해 내·외국인 차별을 통해 조그마한 이익을 보는 것들이 반복되어서 지적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문화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그렇다면 통신사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같은 날 와서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진술인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내셔도 됩니다. (“예” 하는 피심인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진술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이어서 시정조치안과 관련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먼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운영 등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모집금지는 같은 행위가 3사 모두 3회째 반복되어 적용 가능합니다만 영세한 유통점이 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 제외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관련매출액은 각 543.9억원, 416.9억원, 47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은 과다 지원금 위반율, 과다 지원금 수준, 부당 차별 유도 위반율, 가입자 변동율 각 같은 비중으로 평가한 결과 위반의 정도는 SKT, KT, LGU+ 각 69.9%, 69.8%, 58.2%이므로 이를 부과기준율 <표>에 적용하면 SKT, KT는 각 2.9%, LGU+는 2.6%이므로 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을 반영한 기준금액은 각 15.7억원, 12억원, 12.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추가 가중은 하지 않고 추가적 감경은 자율준수 활동이 인정되어 1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율정화반 조치 수준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5%를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과징금은 SKT 14.9억원, KT 11.4억원, LGU+ 11.6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사고발은 대법원 판결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1회 위반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심결례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되 자료제출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여 각 36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시정조치안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조사대상 외국인영업 13개 판매점 모두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90%의 가입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가입자들에게는 가입유형별 요금제별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사항의 경우 외국인영업 시장이라는 점에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지만 관련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3사 모두 위반 정도가 심각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 판단 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됩니다. 필수적 가중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추가적 가중 중 법 자율준수 활동의 경우 자율정화 조치율 50%와 장려금 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5% 감경이 적절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혹시 2월에 연합뉴스가 보도하기 전에 사무처에서 이런 조짐, 이런 흔탁한 불법거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까?

○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업 채널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2월에 언론보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무처의 이번 사실조사 결과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대상 판매점에 우대 장려금을 차별 제공하고 그 실적을 독려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정에 이동통신 3사가 조직적이고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통3사는 최근 3년 내 세 번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내려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로 인한 피해가 영세판매점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적용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더 이상의 관용을 계속 베푸는 것은 법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유사한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의 각고의 노력과 함께 본 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난 2017년 초에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같은 위반행위는 당연히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사무처의 시정조치(안)이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통 3사와 판매점은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인데 조사대상이 13개 판매점이지 않습니까?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대략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몇 퍼센트라는 것이 전체 판매점에 대해서요?

○ **김 현 부위원장**

- 외국인의 통번역이 있는 영업대상별 특수성이 있는 판매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여쭙보는 것입니다.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저희가 조사한 것은 보고드린 것처럼 1월부터 5월까지 19만 정도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한 영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인 대상으로 많이 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판매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만명의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자가 유치된 영업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네요? 이 범망의 대상이 안 된 판매점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언론보도 나오면 거기에 집중해서 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까?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저희가 이번에 시정조치할 때 외국인영업 전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일정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19만명이 가입될 수 없지요. 외국인 19만 가입자라는 것이 통상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1월부터 5월까지 가입한 대상은 19만명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59-23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한다. <가> 결합상품 위약금 부과 관련 행위에 대하여 2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시정명령 1) 새로운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전 이용약관 신고, 이용자 고지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대책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할 것, 2)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에 8일간, 자사 홈페이지에 3일간 공표할 것, 3) 업무처리절차 개선 대책 마련과 시정명령 공표 등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 후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20년 통신 4사 등 총 9개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과 IPTV서비스 결합상품 경품 실태 점검을 진행하던 중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위약금 등을 부과한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과 피심인 행위 사실 중 KT의 이용약관상 약정 및 위약금 제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KT가 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도입한 약정갱신

제도 및 위약금 부과행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T는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19년 1월 1일부터 약정 만료자 등을 대상으로 약정갱신 방식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종류는 신규가입과 유사하게 3년 약정을 하면서 할인을 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품형과 약관상의 재약정과 유사하게 3년을 약정하면서 계약기간할인과 추가할인을 제공하고 위약금을 모두 부과하는 할인형 방식을 판매하였습니다. KT는 '19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관상의 재약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 체계를 유도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월단위 영업정책 수립 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판매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중단한 '20년 11월 5일까지 경품형은 785,707회선, 할인형은 663,593회선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 기간 중 약정갱신 계약을 해지한 총 25,602개 회선에 대해서 계약기간 할인 위약금과 추가할인 경품위약금 등 총 10억 5,809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할인형 약정갱신 추가위약금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1년 이내 기간에서 사용기간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과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한 9,182명에게 추가 할인액 전액을 경품위약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약정갱신 판매중단 및 위약금 환급 조치 내역입니다. KT는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에 '20년 11월 6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12월부터 위약금 환급을 실시해서 11월 말 기준으로 납입정보가 확인된 해지자에게 총 5억 7,179만원을 환급하고 현재 4억 4,448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사항 미고지 행위입니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할인형 약정갱신'을 체결한 109건의 상담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상담에서 추가할인이 경품으로 산정되고,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이 경품위약금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1건의 이용계약서를 확인한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계약서에서 추가할인액을 경품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위법성 판단입니다. <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서비스를 판매한 행위 관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요금 등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KT는 이용약관상의 '재약정'과 유사한 약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해서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이용자의 침해행위 관련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제5호 나목 10)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하거나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심인은 '약정갱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기존 제도와는 다르게 과도한 계약기간 위약금을 부과하고 위약금 부과기준과 다르게 경품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는 재약정 대비 평균 위약금이 약 4배에 달하고 해지율은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관련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시행령 제42조 [별표4] 제5호의2 나목에 따르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런데 피심인이 피심인이 '할인형 약정갱신'을 체결하면서 추가할인액의 경품 산정과 1년 이내 해지 시에는 전액의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제출 의견과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그다음에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 보고의 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정

금 부과입니다. 과징금은 앞서 보고드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과 기준금액 부과 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입니다. 관련매출액은 '약정갱신' 가입회선의 매출액 전체를 산정하고,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가 장기간인 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해서 10억 5,809만 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재약정 대비로 위약금이 4배이고 중도해지율이 절반 수준인 점, 그다음에 환불 불가 금액이 4억 4,448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은 1.75%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사항 미고지 관련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할인형 약정갱신'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의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해 회선에 약 7,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피해회복이 약 75%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은 1.5%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은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 사실이 없어서 100분의 10에 해당 금액을 감경합니다. 추가적인 가중·감경은 가중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 착수 전 판매 중지, 약관 신고 등의 조치를 감안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감경하되, 하한선인 100분의 20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에 따라 과거 적용사례를 고려하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총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17억 원,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는 5.57억 원으로 총 2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아니하고, 약관 미신고 사항은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KT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소위 약정갱신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약관 제도와는 다르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즉, 위약금 관련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제안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일종의 이용자 기망입니다. 또한 부과기준과도 다르게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더불어 할인형 약정갱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자에게 위약금 부과기준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용자에게 끼친 불편과 금전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 사건의 내용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사무처 의견에 동의하며, 나머지 과징금의 필수적·추가적 적용 등에 관해서는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마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KT가 법을 어겨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5억원 정도는 돌려줬는데 4억 4,000만원은 돌려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T가 불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것이 KT의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인데 법의 맹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KT가 이 돈은 다른 곳에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

- KT와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KT는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 등으로 해서 사회공헌프로그램에 시행을...

○ **김효재 상임위원**

- 사회공헌기금으로 내겠다는 것은 KT의 선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행위는 KT에 대한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데 패널티를 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뭔가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김효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자기네 수익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 주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이용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방통위에서 그런 틈을 메워 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건은 KT가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정갱신이라는 미신고 약관을 적용해서 해지 시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결과적으로 이용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 위약금을 낸 직접적인 회선의 수만 하더라도 약 26,000건에 달하고 해당 서비스의 해지율이 재약정 대비 절반도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해지권 제한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자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KT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위원장**

- KT가 약관에도 신고하지 않은 약정갱신 제도를 통해 부당한 위약금을 고객에게 부과한 것은 이용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KT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과 향후 이용자 권익 보호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의 시정조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KT의 결합상품 위약금 부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이용약관에 없는 약정갱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해지 시 적극적으로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소극적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약정갱신은 KT 이외의 다른 사업자들은 운영하지 않는 방식이며, 위약금 부과고지는 서비스 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고지사항 중 하나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 대상이 KT 자사 서비스를 3년 이상 이용하였던 장기 가입자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한정적일지라도 위반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과징금을 산정하고 감경도 30%만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KT는 4월 이동통신 개통 지연, 7월 10G 인터넷 속도 저하 시정조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받았습니다. 금지행위 위반은 아니었지만 10월에는 통신장애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편함을 야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KT가 그동안 기여한 바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 (2021-59-23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결 주문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의견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지난 7월 5일 KBS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21일에 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서, 첫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의 타당성과 적절성, 둘째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셋째 수신료 금액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발전해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미디어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혁신적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전사적 차원의 경영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공적책무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미디어 시장의 건강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전체적인 공적책무의 내용과 이행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와 그 우선순위, 또는 선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방송광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수신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민간과의 프로그램 제작 협력을 강화할지 또는 공영방송의 자체제작 능력을 유지·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대체하는 기금 조성보다는 수신료 인상 시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가교육 지원기능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지원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지원 규모 결정,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교육·교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복가능성 해소를 위해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비중은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공영방송이 공적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방송 제작비 중심의 비용 절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무 수행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조직정비와 인력감축 등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공개하여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매각 가치가 있는 유희자산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자원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수신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회계분리 등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수신료를 산정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부, 공영방송이 협력하여 수신료 금액 결정 절차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은 예산 심사절차를 통해 심사함으로써 수신료에 대한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지속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수신료 수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별지] 37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언제나 균형된 뉴스 편성과 시사보도로 국민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고품격 교양·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사회의 통합,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적재원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조정안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가치와 시청자 권익향상을 위한 방향이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미래 위상과 역할,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 및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한국방송공사는 공적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감한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회계분리 제도 등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수신료의 쓰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그 이행을 지원하는 수신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징수를 위해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과 제출, 처리 등 절차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는 수신료 조정안의 검토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수신료 회계분리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등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안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KBS의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과감한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분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한 사무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신료 현실화라는 용어로 포장한 수신료 인상과 경영혁신 필요성을 병렬식으로 나열한 것은 수신료를 올려주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방통위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혁신 노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즉 일의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 것이나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KBS 수신료는 수신료를 내고 싶은 사람이 내고 내기 싫은 사람은 내지 않는 선택적 시행이 아니라 전기요금고지서에 붙어 나오는 말하자면 세금보다 그 강제성이 두드러진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수신료를 반드시 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BS는 과거에도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으나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력구조 개편, 즉 고임금 무보직 비율을 줄이겠다고 약속입니다. KBS의 방만경영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BS는 2010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2014년까지 전체 재원 가운데 37%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29.2%로 줄이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인건비 비중은 33%였고, 2020년 기준으로 현재는 36.8%에 이릅니다. 2014년까지 인력을 4,204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4년 인력은 4,600명이었고, 현재는 4,500명입니다. 참고로 KBS와 비슷한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는 MBC의 인건비 비중은 21.7%이고, SBS는 15.1%입니다. 둘째는 바로 그런 인력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문제입니다. KBS 전체 직원 4,500여명 중 2직급 이상 상위직이 절반을 넘는 56.5%, 2020년 말 기준입니다. 2017년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1988년의 전체 조직원 가운데 13.7%에 불과하던 2직급 이상의 고액 연봉자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07년에는 45.1%, 2013년에는 절반을 넘어서고 2017년에는 60.1%까지 치솟았습니다. 직원보다 간부가 많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KBS의 인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감사원은 KBS가 인력운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경영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직원의 46.4% 약 2,100명이 연봉 1억원이 넘으며, 이들 가운데 1,500여명은 별도 보직이 없다고 합니다. 전체 조직원 4,500명 중 약 33.3% 3분의 1이 여전히 직급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 6,700여억원 가운데 1,500억원이 매년 이처럼 직책이 없는 고위직 월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점을 들어서 이외에 KBS의 경영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점이 많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KBS가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늘 원용처럼 이야기한 BBC의 수신료 인상 사례를 보면 영국의 BBC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BBC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신료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BBC는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문화부에 제출했고, 문화부는 그로부터 5년 뒤에 영국 감사원에게 BBC가 제대로 이 일을 이행했는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BBC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처음에 낸 계획을 다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2017년부터 BBC는 수신료가 인상되고 그 이후에 물가와 연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종합의견을 보면 KBS의 수신료가 왜 현실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과감한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또 회계분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KBS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의견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 내용에서 저의 생각과 일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거나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KBS 대하드라마 <이방원>을 시청했습니다. 2016년 장영실 이후 5년만에 등장한 KBS 대하 사극이었기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열심히 제작한 것은 분명히 보였지만 제작비 때문인지 초라한 전투 장면과 세트들에 어색한 모습들이 자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오징어게임>의 편당 제작비가 22억~28억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할리우드 제작물은 이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의 제작비는 편당 6~7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한 10억원은 들어가야 하지만 제작비가 부족해 줄이고 줄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 대하사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러나 제작비가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고 OTT

콘텐츠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 이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면 시청률은 떨어지고 매출은 하락합니다. 그러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어 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전체 방송사업매출에서 지상파의 매출 비중은 2011년 34.8% 3조 9,14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9.8% 3조 5,66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KBS의 경우 2011년 1조 4,437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 3,622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KBS 광고수입은 5,987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경영난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서서히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는 필요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와 플랫폼이 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은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론의 장으로서 이제는 방송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영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미디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즉 수신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어떻게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 빅뱅시대 공영방송의 정의와 역할, 기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산정하는 방법과 주기 등을 큰 틀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2,500원인 수신료를 합리적인 선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도화를 통해 수신료를 정쟁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일단 1,300원을 인상하고 본다면 몇 년 뒤에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신료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KBS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국민 속의 토론에서도 지적되었던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경우 국민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KBS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가 가능한 한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KBS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안이 2021년 해를 마감할 때 방통위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KBS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했고, 방통위는 60일에 걸쳐 논의 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서를 2022년 1월 7일 전까지 방통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물론 2004년도에는 KBS 이사회에서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당시 4,000원으로 1,500원 인상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도에는 17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되어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고, 물론 2010년, 2013년도에도 그랬습

니다. 공영방송 공영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심도 깊은 논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KBS에서 제출된 공론화 과정을 통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책무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로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 역시 국민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안은 KBS 공영방송의 역할과 관련해서 국민참여단을 통한 공론조사, 국민전문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립했고,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자구책과 함께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에 대한 미래 비전과 책무, EBS와의 역할 분담 방안, 수신료 조정 절차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방통위가 작성한 의견서도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 수신료 관련 제도개선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전문가로서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OTT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와 함께 KBS는 왜 그런 방송을 하지 못하느냐는 국회의 지적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조정안은 반드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영방송이 겪어야 될 수모,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당하는 일 역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구조가 안정적으로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신료를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숙의과정 또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봅니다. 40년 동안 수신료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역시도 그동안 정치권력에 의해 KBS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이 오늘 논의되는 만큼, 그동안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됐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회 안에서 제기된 내용 중에 혹시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사무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요구사항으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올해 KBS 국정감사를 했고 준비과정에서 KBS에서 받았던 내용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 상임위원 내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에 가서 논의되는 과정을 또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도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잘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방통위가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상파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되는 수신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신료 인상 여부 그리고 인상액 등 재원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신료 문제는 결국은 시청자, 즉 국민의 경제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수신료 제도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또는 동의라 함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영방송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적극적인 개혁과 자구노력 등을 통해서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무처에서 제출한 의견서 원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판단 되어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나 절차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1-59-235~23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라>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티비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20년 UHD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 236억 800만원을 2022년 말까지 집행하여 재허가 조건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 <나> 주식회사 티비씨는 2022년 3월까지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을 선임하여 재허가 조건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경과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허가 조건 및 위반내용입니다. (주)문화방송 관련입니다. (주)문화방송은 2019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20년도 UHD콘텐츠 투자금액 1,440억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2020년도 UHD콘텐츠 투자금액은 1,203억 9,200만원으로 계획에 미달되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주)티비씨 관련입니다. (주)티비씨는 2019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나,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최다액출자자(귀뚜라미홀딩스) 측인 송경석 대표만을 TBC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방송전문경영인 대표이사는 선임하지 않아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주)문화방송은 생존경영 시행 및 드라마 제작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허가신청서상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22년 드라마콘텐츠 제작에만 1,300억원 투자를 계획하는 등 향후 핵심 UHD콘텐츠 제작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며,

당사의 UHD 콘텐츠 투자금액은 매년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예정된 투자규모 역시 타사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주)티비씨는 2021년 3월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방송부문에 관한 모든 업무 결정을 방송상무가 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을 변경·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내·외부의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당사의 전문경영인이 방송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에 불충분할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방송 발전과 방송을 통한 지역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인 만큼 시정명령을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문화방송은 향후 예정된 투자규모 역시 타사와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쿄올림픽이 실시된 2021년에도 당초 투자계획보다 적은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 조건 이행 의지가 미흡한 점, UHD콘텐츠 투자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지상파 UHD투자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UHD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 236억 800만원을 '22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티비씨는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저하 우려,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2년 3월까지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붙임>으로 피심인의 제출 의견 1부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난 11월 1일 위원회 보고 때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미이행한 MBC와 TBC에 대해서는 별도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사무처의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난번에 보고안건을 통해서 이미 재허가 조건 위반 피심인 모두 시정명령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양사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초 이행을 약속했던 재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대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실시간TV 방송을 제공하는 등록대상 PP가 운영하는 방송채널로서 88개 사업자 159개 채널이 참여하였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도 한 해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가’ 그룹은 방송법상 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이 되겠습니다.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소PP채널이 되겠습니다. 공급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되고 평가항목은 자원·과정·성과경쟁력 총 1,000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매출 규모가 큰 ‘가’ 그룹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불리한 제작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제작투자가 이루어졌고, 중·소 PP로 구성된 ‘나’ 그룹에서는 제작투자, 신규제작을 많이 한 채널들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 그룹의 경우에는 매우 우수 채널은 <분야1>은 SBS GOLF, <분야2>는 tvN, <분야3>은 Olive 등 총 11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우수’에서 ‘매우 우수’로 상승한 채널들은 주로 콘텐츠 인력 투입이 증가하고 신규콘텐츠 제작을 확대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하에서 ‘우수’로 상승한 채널들은 제작비가 증가하고 해외시장 판매 수익이 증가한 채널입니다. ‘나’ 그룹의 ‘매우 우수’ 채널은 <분야1>은 Billiards TV, <분야2> 아프리카티비, <분야3>은 이벤트TV 등 총 13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우수(채널 20개) 채널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우수’에서 ‘매우 우수’로 상승한 채널들은 콘텐츠 인력 교육비가 증가했다든지 주로 해외시장 유통·수익이 증가한 채널입니다. ‘보통’ 이하에서 ‘우수’로 상승한 채널들은 해외시장 수익이 증가했다든지 제작비가 증가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2022년 방송대상 '제작역량 우수상'(특별상) 수상과 관련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가' 그룹에서는 CJ ENM 계열의 On Style, '나' 그룹에서는 이벤트TV 채널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안형환 위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지난해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어려운 제작환경 속에서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꾸준한 투자와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는 등 결실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159개 채널이 참여해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제작비 투자와 해외 판매수익이 늘어나 '매우 우수', '우수' 등급으로 상향되는 채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작역량 평가가 실질적으로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평가하는 시기 문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안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과 미디어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우수한 채널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발표하는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특히 이런 결과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혹시 '매우 우수'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요?

○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매우 우수' 이상 채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선정마크를 수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작지원 사업에 10% 정도 반영됩니다. 또한 케이블이나 IPTV 유료방송사들이 PP의 채널 평가 시 4~6점 가까이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저희 평가

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면 매우 좋은 사기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보니까 PP들은 이렇게 상 받는 것이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사 프로그램에 이번에도 우수상을 받았다는 식으로 홍보도 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독려가 되고, 또 많은 PP사들이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159개 방대한 채널을 평가하느라고 안형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단순히 지금은 마크를 주고 평가점수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목적은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환경경쟁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평가절차 및 방법입니다. 먼저 단위시장을 확정하고, 평가지표 개발,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 및 평가의 단계로 진행하되,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 및 방송사업자·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위시장별 경쟁 활성화 정도를 분석·평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방송시장 확정입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입니다. 상품시장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확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SO 방송구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 방송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과

방송광고시장은 각각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시장별 주요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입니다. 시장 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평가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은 IPTV가 가입자 증가세를 주도하여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IPTV 3사의 인수합병의 영향으로 2020년 말 방송구역별로 HHI는 평균 3,718로 증가하였고, 전국기준으로도 3,038로 증가하였습니다.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에도 IPTV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SO와 위성방송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VSB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로 VOD 매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이에 비해 OTT 서비스는 성장이 지속 중입니다. 2021년 OTT 서비스 이용률은 69.5%로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은 50.1%로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시장은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성장한 유료방송이 IPTV 3사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더 강화되어서 3사는 가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각각 85.4%와 89.8%로 과점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의 성장, IPTV의 OTT 서비스 강화·제휴 전략 등으로 인해 경쟁양상 범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입니다. 평가결과는 먼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 1위 사업자 점유율은 감소하였고, 종합편성 계열 PP 점유율은 증가, 지상파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종합편성 계열 PP의 점유율이 최초로 지상파 계열 PP 점유율을 상회하였습니다. 유료방송채널 중요도 증가 추세도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일일 평균 개인 TV 시청에서 지상파채널 시청시간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급집중도는 2020년도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기준으로 HHI가 1,035으로 전년 대비 46 하락하였고,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인 CR3도 40.9%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서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사실상 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급측의 시장집중도는 높았습니다. 다만, 협상력과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채널의 성장, OTT 성장 등으로 인해 앞으로 협상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일반PP의 시장집중도와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OTT 활성화 등 경쟁환경의 변화로 인해 핵심 콘텐츠를 보유한 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IPTV 3사를 통한 협상력 증가 가능성이 모두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입니다. 평가결과입니다. 수요집중도는 2020년도 수요점유율 기준 HHI가 1,350으로 전년 대비 123 하락하였고, CR3도 53.7%로 전년 대비 6.3%p 감소하였습니다. 협상력은 외주제작사 설문조사에서 방송사가 우위라는 입장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종편PP와 OTT 서비스의 경쟁으로 인해서 협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사점입니다. HHI가 하락하였고, CR3도 감소하는 등에 비추어볼 때 수요집중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사의 협상력 우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수요자인 방송사 대비 공급자인 외주제작사가 월등히 많은 시장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광고시장입니다. 시장 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평가결과를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공급집중도는 2020년도 광고매출액 기준 HHI는 971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고, 협찬을 포함한 매출액 기준으로도 HHI가 전년 대비 7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

광고와 OTT광고에 대해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방송광고 대비해서 OTT 광고가 주목도 외 모든 측면 가격, 효율성, 커버리지, 타게팅 등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방송광고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사점입니다. 방송광고 매출액, 광고단가 등에서 사업자 간 격차가 감소하고, 광고매출액 기준과 광고·협찬 매출액 기준 HHI가 모두 감소하는 것들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시장은 더욱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가 올해 시행됐기 때문에 유료방송과의 광고 유사성이 더욱 높아져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광고시장이 모바일광고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방송사업자의 OTT 서비스 광고 대응 행태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 이후 내년 3월까지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책자로 인쇄해서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김 현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올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OTT 서비스 활성화,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으로 변화하는 방송시장 경쟁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시장 평가결과가 지난해 지적이 있어서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평가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료방송시장은 IPTV 3사 중심의 과점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그 외 시장은 더욱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은 IPTV 3사의 인수합병으로 가입자 점유율 합계는 85.4%, 방송사업 매출액 점유율 합계는 89.8%에 달하는 등 과점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채널거래시장, 프로그램 거래시장, 광고시장은 CJ계열, 종편PP 등 유료방송채널의 성장으로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OTT 서비스의 이용률과 유료이용자 비율, 유료방송과의 유사성이 증가하고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수치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경쟁상황평가 위원들도 OTT 서비스의 성장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OTT 사업자가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서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을 마련하여 미디어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가 줄어드는 데 비해 모바일광고와 협찬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던 바, 방송광고 및 협찬제도에 대해서 진행 중인 제도개선 과제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도 역시 대면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대면 서면으로 회의가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OTT 사업자에 대한 분석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OTT 서비스에 대한 성장이 전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강화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것이 '2021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0년 방송시장경쟁상황 아닙니까?

○ 이 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2020년도의 시장상황과 2021년도의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2021년에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 김효재 상임위원

- 평가한 시점은 2021년인데 시장상황은 2020년 시장상황이지요?

○ 이 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 왔고 광고 업계나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2021년 방송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2021년 것이 아니라 2020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공기관의 문서인데 2021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라고 해 놓으면 이것을 놓고 2020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2가지 이슈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매우 다그쳐서 그나마 예년보다는 3개월 정도 앞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그동안에는 재작년 것을 2년 뒤에 국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방통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말을 만들어서 오해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방식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맡아주신 김 현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2021년 12월, 과거에 보니까 2018년도는 방통위 상정 연월이 2018년도 것을 2020년 2월에 했고, 2019년도 것을 2021년 3월에 했는데 이번에 정말 이 해를 넘기지 않고 2020년도 것을 2021년 12월에 했지만 보시다시피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올해 넘기지 않고 2021년도 것을 하는구나', 하지만 내용은 2020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도 통계자료나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체때 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

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당겼는데 적어도 2020년도의 시장경쟁상황평가라면 2021년 상반기에는 나와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함께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평가위원장을 맡으신 김 현 부위원장님,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연구기관 담당자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향후 미디어정책 시장 예측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큰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노력해서, 저는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통계 가운데서 과도하게 늦게 나오는 통계는 제외하더라도 평가결과가 시장에서 또는 정부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좀 더 일찍 평가결과를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활용도를 높이려면 조금 늦더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아니지요.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것이 2021년도에 각 기관 또는 회사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려면 그때 나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2022년도 자기들 정책방안이나 계획을 짜려면 이것이 올 하반기 정도에 나와 주어야 계획을 짜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지요. 물론 다 넣으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어떤 것이 더 실익이 높은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통계가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통계가 굳이 불요불급하지 않는다면 그 통계를 제외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더 빨리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1월에 와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아무튼 부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3개월 정도 당겼습니다. 그런데 경쟁상황평가가 결국은 방송산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차적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월에 회계자료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재산상황 공표집이 6월에 나오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기정통부와 같이 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가 11월에 초안이 나와서 아직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KISDI의 내부 자료로 받아서 겨우 3개월을 당겼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KISDI도 여기에 와 있는데 노력해서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는데, 각종 실태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적인 경쟁상황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사보다는 약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지금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보통 저희도 시작 지점을 3월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3월에 해서 바짝바짝 당긴 것이니까 올해 이 상황,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 조성되어 있는 해라고 보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OTT 시장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새롭게 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대한 평가가 내후년 3월에 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을 11월을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겨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KISDI도 와 계시지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또 하다 보면 경험이 축적되었으니까, 이것도 경쟁상황 평가가 거의 10년 축적된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학계의 요구가 있고, 방송사에서도 요구했고, 저희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는 큰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이 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실무상 또는 절차상의 지연사유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줄일 여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잘 살펴 보시고, 예를 들면 지난번 방송 재승인·재허가할 때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하는데 대상기간 중 1년이 통으로 빠진다는 것은 방송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이 뭔가 빠진 상태에서 심사하게 되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 보고내용의 정확성·엄밀성·신속성 등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할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심사평가 내지는 평가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지연 여부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이리이러한 자료들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나 내부 문제로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결과별로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다>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 질서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올 1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안을 만들었

으며, 그 개선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15일에는 관련 모든 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입니다. 방통위가 운영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와 과기정통부가 관련사업자로 운영한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금지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 온 방통위의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약관 신고 관련 사항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사전·사후 규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목적으로는 채널·프로그램 제공 및 거래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자 간 자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되, 중소 방송사업자의 협상력 열위를 보완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입니다.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으로 공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할 때는 RFP 양식을 PP에게 발송하기 3개월 이전에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한 공개 계획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에서 더 빠른 날까지 PP에게 RFP 양식으로 발송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계약 관련 평가결과의 통보는 평가결과 통보는 원칙적으로 연간 단위로 하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간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가 평가결과를 통보할 때는 평가등급과 장르별 순위 정도 공개하던 것을 더 확대해서 채널군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라든지 채널군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피평가 채널과 동일 채널군에 속한 채널 명단 등 PP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널평가와 채널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제공을 종료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유료방송사에 「PP 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을 마련·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평가채널이 허위 자료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실PP 퇴출과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가 2년 연속 해당 채널 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의 평균점수 이하인 채널과 해당 채널 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에 대해서는 재계약 보류 대상 채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널공급계약서 작성 시부터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채널계약 변경 관련 소명기회 부여 및 종료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나 채널번호 변경, 상위 티어로의 전환 사실 등 최종결과를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잠정 결과를 미리 예고하고 PP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1주일 이상의 절차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시청자에게 이를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널계약의 원칙입니다. 유료방송 채널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테스트 채널 운용 시에는 정규 채널과 테스트 채널은 분리해서 평가하고 운영하되, 텔레비전방송의 10% 이내, 총 20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테스트 채널을 정규 채널로 변경할 때 평가순위 순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채널은 송출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묶은 PP평가 및 계약절차의 변경사항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널평가는 2022년도 채널평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계약 후공급의 적용 시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 후 유료방송사업자와 PP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병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방통위는 방송법이나 IPTV법상 금지행위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하여 주시면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토록 하고, 내년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전반적으로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재계약 종료 문제, 선계약 후공급 문제 등 향후 사업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동안 방통위 소관이었던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약관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해서 확대 개정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채널평가와 채널 구성 이런 부분이 신설되었고, 또 재계약 보류 대상 채널 기준을 정하고 사업자 간 자율거래는 최대한 존중하되, 중소사업자의 협상권과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이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계약 후공급의 적용시기를 이번에는 정하지 못했는데 이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 시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사무처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우리 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렵게 도출된 결과물인 만큼 유료방송사업자 분들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고 또 시청자 피해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널계약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채널 평가 구성에 관련된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무리 없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또 중소기업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발을 떼었다고 생각하고 가이드라인 집행과 함께 시청자 입장에서 콘텐츠 공급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함께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마지막 회의이고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올해 처리한 안건이 166건, 170건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안내서를 발행했습니다. 국민 불편해소 관련된 정책안내서를 발행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배부했고, 받아보신 모 국무위원께서 ‘방통위 참 잘 만들었더라’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데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만한 방송통신 정책 관련 이슈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내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체라디오 관련해서 최근 어느 한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우리 정부에서 최초로 실行了 미디어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벌여온 것들이 아닌가, 이런 감히 자평을 해 봅니다. 그 외에도 올해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정보 대응 과정에서 범부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방통위가 앞장섰다는 점,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서 중간광고를 비롯한 비대청규제를 해소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면접 절차 등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절차들을 마련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즉 OTT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등 기존 법·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한 이런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있어서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에 앞장서는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말씀으로 1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성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아쉬움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인년(壬寅年) 새해 1월 5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폐회】